

주택 거래의 차별은 신고하지 않으면 근절될 수 없습니다.



차별은 항상 이처럼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상처를 주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. 집주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.

“차량 통행이 많아요.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.”

“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아파트는 이미 임대료가 되었습니다.”

“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경사로에서 다치면 보상이 안 됩니다.”

“영어를 하는 사람만 받습니다.”

“광고가 잘못된 겁니다. 진짜 임대료로는 매월 75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.”

“여기는 계단만 있어요. 보행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”

주택 거래의 차별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.

www.hud.gov/fairhousing 에 방문하시거나 주택도시개발부 핫라인 **1-800-669-9777** (음성) **1-800-927-9275** (TTY)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미주택도시개발부와 전국공정주택거래연합이 함께 하는 공익 메시지입니다. 연방 공정주택거래법은 인종, 피부색, 종교, 국적, 성별, 가족 조건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www.hud.gov/fairhousing 을 참조하십시오.

NFHA
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